

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1170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6. 30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9. 7. 2

다. 상정 의 결 일 자 : 2009. 7. 13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

2. 제정이유

고가의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중심으로 농기계를 대여해 줌으로써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여주고 기계 이용률을 높이는 한편 농촌일손 부족에 대한 능동적 대처로 노동력 절감에 기여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농기계 대여은행은 농기계 대여, 사용료 징수, 농기계이용현장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 함(안 제4조)

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별도의 관리요원을 둠(안 제6조)

다. 사용허가 기준은 1농가당 1대 기준으로 2일 이내로 함(안 제8조)

라. 대여(사용)료는 구입가격, 농가부담 등을 감안 1일 최저 5,000원으로 하고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구입가의 0.2% 기준)을 적용 5,000원 단위로 정함(안 제9조)

마. 농업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하는 등 사용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허가·취소 또는 정지하고 대여 농기계의 출고 후에 일어나는 인적·물적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짐(안 제13조, 제14조)

바. 대여은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매년 운영계획 및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 함(안 제16조)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09- 491호(2009. 5. 25 ~ 2009. 6. 15)
- 의견 제출사항 :

나. 관계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 의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합 의 : 관련부서 합의됨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농업의 기계화로 대형, 고가 농기계를 구입하기 어려운 농가에 임대료를 받고 대여하는 것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경영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조례는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나, 문장의 구성 및 조항별로 연계되는 부분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안 제7조 사용허가 및 교육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기계운전 요령을 단시간에 교육이 가능할 것인지
- 안 제17조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에 출고 후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진다고 되어 있으나 제도적 안전망을 위한 보험가입 등 조치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농업인에게 대여할 농기계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거쳐 수요가 많은 농기계부터 확보토록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며, 대여하고 반납시 기계청소, 고장여부 등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질의 및 답변 :

- 문 : 대여은행을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곳 보다 이용하는 농민의 접근성 등 군 지역농협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습니까?
- 답 : 지역농협과 몇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설치를 하겠다는 농협이 없어 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차츰 지역농협으로 업무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 문 : 제도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에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는 가난하여 농지가 없을 것인데 필요가 있습니까?
- 답 :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자기 농지는 없으나 임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문 : 농기계 대여사업 자체는 위탁에 비중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14조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에 사용자가 책임의 한계를 벗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에 따른 대비를 해야 합니다.
- 답 :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규칙에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 :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1항1호와 3호의 출고일 이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와는 이중적인 성질로 3항을 삭제 요청합니다.
- 답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 : 안전사고 예방교육은 한 장소에 모아서 합니까?
- 답 : 네 그렇습니다.
- 문 : 사용자와 다음 사용자와의 농기계 이동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작업종료 후 반환시 관리 요원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인계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답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7. 토 론 : 없음

8. 심사결과 :

- 2009. 7. 13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

고성군조례 제 호

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제1항 “3호”를 삭제한다.

신 · 구 문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1조 (사용료의 반환) ①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p> <p>1~2 (생략)</p> <p><u>3. 출고일 이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u></p>	<p>제11조(사용료의 반환) _____</p> <p>_____</p> <p>_____</p> <p>1~2 (현행과 같음)</p> <p><u>3. 삭제</u></p>